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년월일 : 2019. 07.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호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 나.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가능
- 다. 자치분권과 지역현안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창구 필요

##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2조)

- 1)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나. 기능(제3조)

-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 4)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다. 임원(제5조~제6조)

-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선출
- 2)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라. 회의 및 의결(제7조)

- 1) 회의는 정기위원회총회와 임시위원회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위원회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위원회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마. 의안 제출(제9조)

-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제12조)

-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 사. 사무국(제13조)

-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둠
-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함

#### 아. 사무국의 업무(제14조)

-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자. 자문위원(제15조)

- 1)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

차. 재원(제16조)

1)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카.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제18조 ~ 제19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타. 감사실시(제20조)

1) 매 회계연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 실시

2)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 3. 참고사항

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 1부.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다. 예산조치 : 협의회 연간 부담금 500만원 반영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계획

1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립

### □ 설립목적 : 주민 중심의 자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 □ 추진경과

- 창립총회 : '18. 10. 15.(월)
  - 규약안 승인, 회원 확인 및 임원 선임, 사무국 등 조직 구성
  - 총회 당시 77개 자치단체 → '19. 7. 10 기준 102개 자치단체 참여

### □ 기 능

- 국내 · 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 연구
-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등

### □ 가입대상 :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 지방정부의 장

- 가입동의('19.7.10현재) : 102개 기초자치단체
  - 수도권 53개, 중부권 16개, 강원 5개(춘천, 홍천, 양구, 인제, 정선), 영남권 12개, 호남권 16개

### □ 조직형태 및 회의운영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회의운영 : 정기총회(상 · 하반기 각 1회), 필요시 임시총회 개최
- 임 원 : 회장 1명,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 등
- 부 담 금 : 연 5백만원

### □ 가입절차

- 동의서(신청서) 발송 → 군 의회 의결(협의회 운영규약) → 운영규약 고시 → 강원도 가입 보고 → 부담금 납부

## 2

## 가입 필요성 및 검토 의견

### □ 가입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호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에 참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가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가능
    - 단일 지자체에서 시행·조사·연구하기 어려운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 추진 가능
  -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
    -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지방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창출 정책 발굴
  - 자치분권과 지역현안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창구
    - 지방 분권개헌, 관계법령 개정, 수평적 재정 배분의 문제 등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역할 수행
- **검토의견 : 지자체 간 협업증진 및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 가입추진**

## 3

##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 '19. 8월 중
- 협의회 부담금 납부 : '19. 9월 중

붙임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현황 1부.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붙임 1]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

2019.07.10.(수) 기준

지 역 (가입대상)		가입(102)
수 도 권 (53)	서울(22)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인천(5)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서구
	경기(26)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중 부 권 (16)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3)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8)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5)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정선군	
영 남 권 (12)	부산(4)	북구, 연제구, 사상구, 남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 남 권 (16)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7)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진안군
	전남(4)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붙임 2]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 ·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 · 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 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 · 군 · 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 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缺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 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총회와 임시위원회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회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 한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7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 ·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 · 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21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 관 계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2절 행정협의회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 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